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10건 중 1건

특허·신기술공법 막무가내식 활용

경기도 A시는 지난 2013년 7월 도로확·포장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을 사전검토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경남도 B군은 2013년 5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로 제한했다.

C건설은 지난해 9월 금속 가공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절차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을 사용했다.

D감리업체는 지난해 10월 E기업 사옥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F차장을 신고하고, 실체는 G과장으로 하여금 감리업무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건설관리 취약부문 점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에서 10건 중 1건 꼴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가 계획·설계 용역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당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과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4면

우선 추진단은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계약 △시공 △감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에 착수했다.

계약 분야는 특허·신기술 공법과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로 구분해 조사가 이뤄졌다.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는 지난 2010~2015년 발주된 1만

1539건을 전수조사해 위법행위 1483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95건은 공법 필요성 사전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288건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동계약 방식으로 입찰공고된 계획·설계 용역은 2384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1370건을 적발했다.

지자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가 1288건에 달했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82건이었다.

시공 분야와 감리 분야에선 KS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과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에 따른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추진단은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과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했고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 33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파악했다.

박경남기자

비리의혹 수사의뢰 지자체는 예산삭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건설 관리 취약분야 집중 점검에서 적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수사 의뢰 및 징계요구와 행정처분의 철퇴를 내렸다.

계약 분야 중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부실 시공 등 사안이 중대한 일부 사례를 조사해 비리 의혹이 있는 18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무거운 지자체 공무원 27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계획·설계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동계약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 165명도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의 발미를 채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청했다. 특허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용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4개 지자체에 대해선 행정자치부가 내린 지방교부금을 지급할 때 총공사금액(71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71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시공 분야에선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한 철강재를 사용한 15개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감리일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감리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 공무원 간 유착 방지를 위해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을 갱요하는 등 계약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자부 예규에 반영했다.

또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건설 관리 취약분야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 주의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일정 규모 이상 소방시설공사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

감리원을 의무적으로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감리업체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를 강화했다.

KS규격 미달 자재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선 품질시험 단계별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고 품질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품질시험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생산, 수입통관, 유통, 건설현장 등 단계별로 기준 미달 철강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A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회사가 C회사에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요건을 갖추면, C는 B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을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먼저 ①B의 지급청구,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B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B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C가 공사를 시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은 C가 A에게 하여야 하지만, B가 A의 위임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 요청이 A에게 도달할 때 발생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위 ①, ②, ③ 중 하나 요건도 직접지급 요청이 A에게 도달한 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A에게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후에 위 요건이 소멸하였다더라도 일단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B의 파산으로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한 후에 B의 파산이 폐지된 경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또는 B가 기성대금 지급을 2회 지체하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한 후에 B가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A의 직접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직접지급 요청이 A에게 도달한 때까지 시공이 완료된 부

분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시공된 부분의 하도급대금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C가 새롭게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직접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C의 직접지급 요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 ①, ②, ③의 요건이 없더라도 A, B, C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C의 직접지급 요청이 없어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합의는 반드시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 순차적 합의도 가능하다. 건설현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직접지급 합의를 한 후 실제 C가 시공을 하였을 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A가 C에게 직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B가 A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불동의서만으로 직접지급의 3자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응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강원도의회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통령 공약이자 강원도민 염원인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지만 아직도 현실화 안돼...

“동서고속철도 더는 못미룬다” 《서울~속초》 뚝뚝뚝친 강원지역 건설업계

사업타당성 조사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강원도와 강원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의회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동서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강원건설단체는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강원지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로 구성된 도내 건설단체 연합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동서고속철도의 사업타당성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동서고속철 사업이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동서고속철도는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30여년간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

사업타당성조사 발표 지연에 “속원사업 조속 추진” 한목소리 울림 이후 물량가뭄 우려도

공약이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과정에 있지만 기재부는 발표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정부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정책분석(AHP)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정부의 이런 입장이 사업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동서고속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와 최근 최문순 지사와 김시성 도의회 의장, 동서고속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단체장 등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정부의 입장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건설업계가 동서고속철 사업에 이처럼 한목소리로 대

응에 나선 이유는 평창올림픽 관련 건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도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원도는 최근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6조원이 넘는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관련 공사가 끝나면 정부 지원 예산이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설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수요에 따른 SOC 공급 원칙보다는 공급이 우선돼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현재는 B/C 수치가 낮을 수 있지만 먼저 고속철이 건설되면 관광 수요 등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공사가 끝난 이후의 공사 물량 감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동서고속철도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2분기 철근값 '58만5000원'

〈SD400·10mm, 현금가〉

전통 끝에 2분기 철근 기준 가격이 t당 6만원 인상된 58만5000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014년 분기별 가격 협상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첫 인상이다.

28일 대한건설자재지협 회의(이하 건자회)와 제강업계는 2분기 철근(SD400·10mm, 현금가) 기준가격을 1분기의 52만5000원에서 6만원 인상한 58만5000원으로 합의했다.

기준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4월 마감을 앞두고 불안했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강사의 철근 재고는 16만 t 수준으로 가공물량 등을 제외하면 15만 t을 밑돌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4월에만 100만 t 이상의 철근이 팔려 제강사들의 목표(95만 t)를 넘어섰고 최대 110만 t 이상도 판매 가능하다는 업계의 관측이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준가격 타결마저 늦어져 가수요까지 발생,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수급 불균형이 생길 때마다 대체재로 쓰였던 중국산 철근마저 인

1분기 보다 6만원 올려 분기별 협상 이후 첫 인상

천함에 묶여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소량마저도 t당 가격이 49만원을 호가해 대체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다만 인상된 가격이 제강업계가 당초 요구한 인상폭을 100% 수용한 결과여서 건설업계에는 작지 않은 과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준 가격을 협상할 때 제강업계와 건자회는 각각 제시한 가격의 중간 정도로 조정,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건자회는 3월 중순 첫 협상을 시작할 당시 3만5000원 인하를 요구했고 제강업계의 인상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때문에 제강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건설사 구매 담당자는 “가격을 인상한다고 부족한 철근이 갑자기 빨리 공급되는 것은 아닌데다 제강사들이 1분기에 의도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면서 가격이 인상된 측면이 있어서 6만원

인상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렵게 2분기 기준 가격이 결정됐지만 3분기 협상까지 풀어야 할 속제도 남았다.

1분기 협상부터 건자회에서 관찰했던 철 스크랩 가격 변동폭을 얼마나 적용할지가 문제다. 과거 건자회와 제강업계는 철 스크랩 가격 변동폭을 100% 반영해 기준가격을 정했다.

그러나 건자회에서는 철근 원가 중 철 스크랩은 최대 55%를 차지할 뿐이냐 6만원이 올랐다고 철근 값을 6만원 올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제강업계는 8년 이상 지켜온 협상 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1분기에는 건자회 운영진이 꾸러지고 치른 첫 협상이어서 급하게 넘어갔고, 2분기에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황이 나빠지자 이번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문수기자 moon@